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8. 9. 12.(수) / 총 2매(본문 2)
담당 부서	산업입지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김근오, 사무관 민정철, 사무관 이은영 • ☎ (044) 201-3674, 3675, 366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“산업특성 무시 황당한 산단 녹지규제… 유화 신·증설 줄줄이 좌절” 보도 관련

- “울산시 민간기업 ‘카프로’의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복잡한 규제
로 인해 10년째 보류 중”이라는 매일경제 보도내용과 관련하여
국토부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.
- 먼저, ‘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’은 환경부와 국토교통
부가 공동*으로 운영하고 있는 규정으로, 향후 관계기관과 해당
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- * 산업단지의 환경·환경관리기준,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·지원·관리 및 수질
및 대기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(통합지침 제3조제2호)
- 다음으로, “쿠광이 대구 국가산단 내 물류센터 입주를 요청하였으나
변화가 없는 상황”이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
- 대구시 등에서는 해당 요청사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신청을
준비하고 있으며, 국토부에서는 관련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지
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9.12)>

- ◆ 카프로는 기존 공장 인근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용지가 있지만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용도변경이 필수
 - 카프로가 녹지(3만3000㎡)를 용도변경해 새 공장을 지으면 국토교통부의 ‘산업 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’에 따른 녹지비율보다 더 낮아짐(8.45%→8.4%)
 - 울산시 등과 산업단지 외부에 대체 녹지를 조성하는 대안을 통해 녹지비율 완화를 추진 중이나, 규제 개선에 대한 절차 복잡으로 해당 신청은 10년째 보류
- ◆ 구광과 대구시는 대구 국가산단 내 지원용지시설에 물류센터 입주를 허용 요청하였으나 변화가 없는 상황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민경철사무관, 이은영사무관(☎ 044-201-3675, 3663)에게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